

## 보 고 안 건

연번	유형	안 건 명	제안부서
1	정관변경	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	공공보건 의료재단

공공보건의료재단

# 1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## □ 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정관)제3항

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장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5. 16.>

## □ 개정내용

-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에 명시된 정원표(별표2) 개정

- '22년 인력 증원 관련 “현행 49명에서 6명이 증원된 55명으로 개정”
- 서울의료원 소관 “서울시 산하 의료기관 통합구매” 업무의 재단 이관에 따라 '22년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신규 증원 4명에 대한 정원표 반영
- '22년 온라인 보건소 구축사업 등 운영을 위한 신규 증원 2명에 대한 정원표 반영

※ 신규증원 내역

- 의료기관 통합구매(4명) : (연구직) 2급 1명, 3급 1명 / (일반직) 3급 1명, 4급 1명
- '22년 사업 운영 및 전산(2명) : (연구직) 3급 1명 / (일반직) 3급 1명

※ '22년 시의회 최종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

## □ 향후계획(안)

- 시의회(보건복지위원회) 정관 개정(안) 사전 보고 : '21.12월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: '21.12월
- 보건복지부 허가 및 개정(안) 시행 : '22.1월

작성자 | 경영기획본부장: 이상운(☎6386-8302) 전략기획팀장: 이성우(☎8303) 담당: 강수민(☎8305)

붙임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**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**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
별표2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								별표2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							
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
계	49	1	4	6	10	13	15	계	<u>55</u>	1	4	<u>7</u>	<u>14</u>	<u>14</u>	15
임원	1	1	-	-	-	-	-	임원	1	1	-	-	-	-	-
일반직	9	-	1	1	1	3	3	일반직	<u>12</u>	-	1	1	<u>3</u>	<u>4</u>	3
연구직	39	-	3	5	9	10	12	연구직	<u>42</u>	-	3	<u>6</u>	<u>11</u>	10	12